

# 대구예술대학교 입시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

(제정 2018.10.11. 교무위원회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직원 등이 입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업무)**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당 지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시(수시모집, 정시모집, 편입모집, 추가모집 등) 업무
2.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출제, 감독, 평가, 준비 및 진행, 전형안내, 회의 등

**제3조(지급대상)** 입시수당은 입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지급한다.

**제4조(지급액)** 입시수당 지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시수당은 입학전형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.
2. 입시업무진행에 따른 입시경비와 외부채점수당을 우선으로 한다.
3. 그 외 입시수당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